#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9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현정ㆍ이기헌ㆍ박해철

이재관 • 박상혁 • 박정현

박균택 · 정진욱 · 오세희

이개호 • 박홍배 • 박희승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중·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중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 법률 제 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용"으로, "증축을"을 "증축·개축 및 대수선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를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는"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를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 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를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 항제1호, 제4조제8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 허가 또는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	제1조(목적)
·초등학교 · <u>중학교 및 고등학</u>	<u>중</u> 학교·고등학교
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	<u>및 특수학교용</u>
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	
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u>증축을</u> 쉽게 함을	<u>중축·개</u>
목적으로 한다.	축 및 대수선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u>중학교 및 고등학</u> 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u>중학교 및 고등학</u> 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u>중학교 및 고등학</u> 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1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u>중학교 및 고등학</u> 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3. (생 략)	1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 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초등학교 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 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 2. (생략)
- ④ ~ ⑥ (생 략)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u>학교용지</u>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 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 함할 수 있다.

<신 설>

<u>.</u>
1
고등학교와 특수
<u> </u>
<u>=  112 C</u>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다음 각</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u> 우에는 그에</u>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 <신 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역 나에 사립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수 있다.

<신 설>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u>경우</u>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
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
·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
하는 경우
8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u>에</u>
·.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
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
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 략)
  -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u>제3호 및 제4호</u>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 ⑥ (생략)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 립 유치원·초등학교·<u>중학교</u>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 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 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u>제3호·제4호 및 제</u>
<u>5ই</u>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
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
<u>중학교·고</u>
등학교 및 특수학교의